

「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4. 11(월) 평창군수(도시주택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5. 11(수)
- 상정일자 : 2016. 05. 16(월) 제21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도시주택과장 김찬수)

- 동 조례 설치 근거인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이 2008.3.28. 폐지됨에 따라,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「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는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일 제정되었음.
- 본 조례 설치 근거인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됨에 따라,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

「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·의무는 평창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.

②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평창군 일반회계에 속한다.